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정 2020. 2.19. 규칙 제909호
개정 2022. 2.10. 규칙 제99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제1항에 따른 민간재해예방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업무수행능력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항, 제33조제2항, 제48조제2항, 제74조제3항, 제88조제3항, 제96조제3항, 제100조제2항, 제120조제3항, 제126조제3항, 제135조제4항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받은 기관에 대한 평가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칙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민간재해예방기관”이란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안전보건교육기관(제2호부터 제4호의 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석면조사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총칭하여 말한다.
2.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이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전보건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이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직무교육기관”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평가대상) ① 평가는 평가 실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정·등록된 날이 1년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별도의 평가 대상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조(평가주기) ① 기관 유형별 평가주기와 평가 대상업무는 별표1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평가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기준) ① 기관에 대한 평가 기준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8조제1항, 제91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29조제1항, 제134조제1항, 제178조제1항, 제191조제1항, 제212조제1항을 따른다.

② 제1항의 평가기준에 따른 세부평가 항목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장 평가반 구성

제7조(평가반) ① 평가반은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평가반을 구성할 때 외부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반장은 공단직원 중 1명이 한다.

제8조(외부 평가위원 자격) 외부 전문가는 기관 유형별 해당분야 업무 지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지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산업기사) 자격 보유자로서 실무경력 5년(산업기사7년) 이상
3. 석사학위 보유자로서 실무경력 3년(박사2년) 이상
4. 학사학위 보유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5. 「의료법」에 의한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 의학분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제9조(외부 평가위원의 위촉 등) ① 이사장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외부 평가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② 외부 평가위원 임기는 당해연도 평가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외부 평가위원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즉시 외부 평가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기관 평가 때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한 경우
2. 기관 평가를 게을리 한 경우
3. 특정 기관에 고의로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평가한 경우
4. 그 밖에 외부 평가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10조(평가자의 제척·회피) ① 이사장은 평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기관이 평가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2. 평가자가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평가자가 기관에 대하여 자문, 고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평가에서 제척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② 평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기관 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 ③ 이사장은 평가자에 대하여 평가 참여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3장 평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1조(평가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이사장은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관 유형별로 평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에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업무담당 3급 이상 직원으로 한다.

제12조(평가운영위원회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 궐위 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장을 대행한다.

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평가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2.10.>

1. 평가계획의 확정
2. 평가방법의 변경
3. 평가기준 세부항목 및 배점
4. 제22조에 따른 기관별 평가등급 확정
5.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사항

제14조(평가운영위원 위촉 등) ① 평가운영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평가운영위원이 된다. 다만, 업무 유형별 특성에 따라 당연직 평가운영위원을 고용노동부 담당 사무관 및 공단 본부 소관업무 담당 부장으로 할 수 있다.

1. 고용노동부 :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업무수행능력 평가업무 소관 과장
2. 공단 :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업무수행능력 평가업무 소관 부서장

② 위원은 당연직을 제외한 외부(공무원 제외) 위원 구성 비율을 50%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외부 위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③ 기관 유형별 업무 특성에 따라 필요시 **관련학회** 등의 복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2.10.>

④ 이사장은 평가운영위원의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사위원 위촉을 해촉할 수 있다.

1. 운영위원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한 경우
2. 운영위원회 참석을 게을리 한 경우
3. 그 밖에 평가운영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15조(평가운영위원의 제척·회피) 평가운영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평가자”는 “평가운영위원”으로 본다.

제16조(평가실무위원회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평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공단의 공공기관평가센터 소장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하되, 필요시 **관련학회** 등의 복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2.10.>

제17조(평가실무위원회의 기능) ①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평가 세부일정 및 평가자 구성·운영

2. 평가항목 적용 세부기준 수립

3. 평가 결과의 집계 및 이의신청서 검토

4. 평가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5. 그 밖의 평가 세부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대한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평가절차 등

제18조(평가계획의 공고) ① 이사장은 평가 시작 15일 전까지 기관 유형별 평가 실시계획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평가 대상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에 제6조제2항의 세부평가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방법) ① 평가는 관련 서류, 시설·장비 보유실태 및 업무 수행 적정 여부 등을 기관을 방문하여 평가한다. 다만, 서류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서면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평가대상 기관은 평가반이 요청하는 제6조의 평가기준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평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평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③ 평가반은 평가에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한 사업장을 방문하여 수행업무를 확인할 수 있다.

제19조의2(자체평가 실시) ① 이사장은 평가대상 기관에게 제6조의 평가 기준을 적용한 자체평가 결과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를 기관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자체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2.10.]

제20조(이의신청 등) ① 이사장은 평가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유형별 평가 종료 후 대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대상기관은 평가점수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이사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제2항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거쳐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21조(수당 등) ① 이사장은 운영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외부평가 위원에게 공단 여비규칙 및 지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외부 평가위원이 대학교수 및 의사인 경우 한국엔지니어링 협회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기술사 등급의 평가수당을 지급한다.

제5장 평가결과 공표 및 활용

제22조(평가등급 결정) ① 이사장은 평가대상 기관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평가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1. S 등급 : 합계 점수가 900점 이상
2. A 등급 : 합계 점수가 800점 이상 900점 미만
3. B 등급 : 합계 점수가 700점 이상 800점 미만
4. C 등급 : 합계 점수가 600점 이상 700점 미만
5. D 등급 : 합계 점수가 600점 미만

② 이사장은 평가대상 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평가등급 공표 이후 해당 기관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평가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제24조의 혜택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3조(평가결과의 보고) 이사장은 평가결과를 익년도 1월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이사장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2.2.10.>

1. 공단 각종 지원사업 우선 참여
2. 정부 포상 건의
3. 그 밖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3호는 제13조의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22.2.10.>

제25조(전산시스템 운용) 이사장은 기관 평가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2.1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 2. 19.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 2. 10. 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정·등록 유형별 평가주기 및 평가대상업무 <개정 2022.2.10.>

유형	평가주기	평가대상업무
안전관리전문기관	매년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업무
보건관리전문기관	매년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업무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매년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업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매년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업무
직무교육기관	매년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업무
안전·보건진단기관	매년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업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매년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업무
안전인증기관	매년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업무
안전검사기관	매년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업무
자율안전검사기관	매년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업무
석면조사기관	격년	공고일 기준 최근 1~2년간 업무
작업환경측정기관	격년	공고일 기준 최근 1~2년간 업무
특수건강진단기관	격년	공고일 기준 최근 1~2년간 업무

제 호

위 축 장

성 명 :

위축기간 :

귀하를 산업안전보건법 제〇〇조의 규정에 의한 () 분야 외부
평가위원으로 위촉합니다.

< 평가 참여 시 준수사항 >

1. 외부 평가위원은 평가하는 기관이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관
평가에 대한 기피신청 및 회피를 하여야 한다.
2. 외부 평가위원은 평가 시 동 규칙 제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20 년 월 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청 렬 서 약 서

본인은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와 관련하여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향응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으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평가에 참여하는 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한 평가 시에는 스스로 평가에 참여하지 않도록 회피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서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제 호

위 축 장

성 명 :

위축기간 :

귀하를 산업안전보건법 제〇〇조의 규정에 의한 () 분야 평가
운영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 심사 참여 시 준수사항 >

1. 평가 운영위원은 기관이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관 평가에 대한 기피 신청 및 회피를 하여야 한다.
2. 외부 평가 운영위원은 평가 시 동 규칙 제14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20 년 월 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 평가 결과 통보서

□ 기관현황

기 관 명	
소 재 지	

☐ 평가현황

평 가 일	
평 가 자	

□ 평가결과

평가등급		평가점수			
평가항목 (배점)	점수	평가항목 (배점)	점수	평가항목 (배점)	점수
1. 세부항목 ()		2. 세부항목 ()		3. 세부항목 ()	

「산업안전보건법」 제 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조에 따라 실시한 기관 평가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 평가항목(배점), 세부항목(배점) 표기란의 수는 해당 사항에 따라 조정 가능

평가결과 이의신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이 의 신 청 기 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주 소 (소재지)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 (e-mail)	
평가분야		☐ 안전관리전문기관 ☐ 보건관리전문기관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 직무교육기관 ☐ 안전인증기관 ☐ 안전검사기관 ☐ 자율안전검사기관 ☐ 석면조사기관 ☐ 작업환경측정기관 ☐ 특수건강진단기관 ☐ 안전·보건진단기관		
이의신청 내용				
기타 사항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_____ 대표자_____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